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94 |
|----------|-----|

2021. 4. 30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4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4월 22일

-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육미선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,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육성·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의 - 마을공동체 미디어(안 제2조)
- 기본원칙 및 도지사 책무(안 제3조)
-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(안 제5조)
-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6조)
- 우수콘텐츠의 활용(안 제8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육성·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  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,
  -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였으며,
  - 안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정함.
  -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,
  - 안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,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단체,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
-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

록 마을공동체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694 호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년 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

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육미선 의원 등 7인  |
| 발의연월일 | 2021년 4월 13일 |

#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육미선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94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1년 4월 13일

발 의 자 : 육미선, 임영은, 이옥규,  
박상돈, 심기보, 오영탁,  
허창원

## 1. 제정이유

-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,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육성·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정의 - 마을공동체 미디어(안 제2조)
- 기본원칙 및 도지사 책무(안 제3조)
-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(안 제5조)
-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6조)
- 우수콘텐츠의 활용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공동체협력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2021. 3. 31. ~ 2021. 4. 5.

##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마을공동체 미디어"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, 음성,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 
② 도지사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,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
2.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
3.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)**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
2.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, 실습, 제작 등의 활동
3.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
**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
2.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
3.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
4.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사무의 위탁)**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「충청북도

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우수콘텐츠의 활용)** 도지사는 마을공동체에서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.

**제9조(협력 체제의 구축)**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,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,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19. 12. 1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8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